

#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유학” 에서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필요서류 준비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점검

졸업 후 취업준비  
취업준비를 위한 재류자격변경수속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유학” 에서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인 27 종류의 재류자격으로  
정해진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재류자격인 “유학” 을,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등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문지식·국제업무”	■ “기술”
활동 내용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와 감수성을 요구하는 업무.	이학, 공학, 그 외 자연공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취업직종	마케팅, 인사, 경리, 재무, 기획, 총무, 법무, 상품개발, 홍보, 선전, 디자인, 통역, 번역, 어학 지도 등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연구개발, 건축설계, 애플리케이션개발, 생산 기술, 품질관리, 시스템관리 등
조건·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또는, 종사하려는 업무와 관련해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자로 해당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li> <li>2.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와 감수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선전, 또는 외국과 거래업무, 복식디자인, 실내 장식디자인, 상품개발 등의 업무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을 것.</li> <li>· 번역, 통역 또는 어학 지도 등에 종사할 때에는 대학 졸업 자격을 지니고 있을 것.</li> </ul> </li> <li>3. 일본인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또는, 종사하려는 업무와 관련해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해당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 (단, 정보처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려고 할 때에는, 정해진 정보처리기술에 관련된 시험에 합격했는지,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을 지니고 있으면 위의 조건에 해당 사항 없음)</li> <li>2. 일본인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li> </ol>

취업을 목적으로 재류자격의 변경이 허가된 자 중에서, 약 70%가 「인문지식·국제업무」, 약 20%가 「기술」이며, 이 두 가지의 재류자격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 ■ 전수학교 유학생 관련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사” 칭호를 얻은 사람에 있어서, 그 활동이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등의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에 해당하고, 취업한 곳의 업무내용과 전수학교에서 습득한 내용에 관련성이 있으면,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준비

##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점검

「유학」에서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은, 원칙상 본인이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방입국관리국, 동 지국(나리타·주부·간사이 공항지국을 제외) 또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신청 시기는 대학 신규졸업자가 4월부터 취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그 해의 1월(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전년의 12월)부터 접수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 등의 심사는 1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절차에 대해서는 채용확정된 단계에서 관할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둡시다.

### ■ “인문지식·국제업무” 또는 “기술” 로 변경할 때 제출할 서류

- (1)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명서(제시)
- (3) 그 외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moj.go.jp/>

(메인페이지→) 각종 수속안내”의 “각종 신청용지는 여기에서”)


자신이 준비·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취업처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학교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등, 관계처에 의뢰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합니다.

### ■ 심사 내용

- (1) 신청인의 학력(전공과목, 연구내용 등) 그 외 경력을 종합해 봤을 때 상응하는 기술·지식 등을 지닌 자인가?
- (2) 종사하려는 업무내용이 신청인이 지닌 기술·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가?
- (3) 신청인의 처우(보수 등)가 적당인가?
- (4) 고용기업의 규모·실적에 안정성·유지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업무를 활용하기 위한 기회가 실제로 제공되는가?

### ■ 재신청

심사 결과 불가판정을 받아도 재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판정의 이유가 개선되어 있지 않으면 재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심사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전부 갖추어서 제출합니다.

	재류자격변경 수속 관련 사이트	입국관리국 <a href="http://www.immi-moj.go.jp/">http://www.immi-moj.go.jp/</a>
		도쿄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a href="http://www.tfemploy.go.jp/">http://www.tfemploy.go.jp/</a>

# 졸업 후 취업준비

## 취업준비를 위한 재류자격 변경수속

졸업할 때까지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유학」에서 「(취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특정활동」으로 재류자격 변경절차를 밟아, 대학졸업 후 1년간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간으로, 한 차례만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약 1년간 유효합니다.)

### ■ 대상자

- 대학(단기대학 포함), 대학원 정규과정 졸업자.
-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자.

###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명서(제시)
- (3) 재류 중의 경비지변 증명(송금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4) 직전까지 재적한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전문학교 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전문사 칭호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추가)
- (5) 직전까지 재적한 대학 등의 추천장
- (6) 계속 취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직활동 기록, 전형결과 통지서류 등)

“특정활동”일 때 취업이 정해지면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등으로 재류자격 변경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주의

-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신규대학 졸업자 채용을 중심으로 인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년도 채용이 시행되는 시기(4월~9월)에 속해 있으면,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 채용이 결정되어도 다음 해 4월까지 입사 대기인 경우가 있다.
- 통상 “신규졸업 채용”과 다른 일정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또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망의욕을 전달하기 어렵다.

또한, 채용확정을 받았으나, 다음 연도 4월부터 채용될 경우, 입사할 동안 「(채용확정자를 위한)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체제가 가능합니다만, 재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류자격 변경신청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류 중 모든 경비 지원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2)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등 취업 재류자격으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
- (3) 내정받은 기업으로부터 채용 내정통지서 등 내정사실과 내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연락의무 등을 엄수함이라는 것이 기재된 서약서
- (5) 채용까지 내정된 기업에서 연수 등을 실시할 경우, 연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